

#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는 공동구 설치 의무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앞으로 200만m<sup>2</sup>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는 공동구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공동구(共同溝)**란 전기·가스·수도, 통신시설 등 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므로써 도시미관, 도로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그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시설은 개별 매설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의 반복굴착에 따른 도심교통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대다수 국민,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잦은 도로굴착 및 보도블럭공사를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09.12.29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구 설치 의무화 사업규모 및 대상지역 설정

-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 규모는 공동구 활성화 정책의 효과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을 상호 고려하여 200만m<sup>2</sup>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 의무화 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개 사업지역(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외에, 2개 사업지역(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을 추가함.

### ② 공동구에 들어갈 수용시설 범위

-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sup>1</sup>, 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가스관, 하수도관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공동구협의

회<sup>2</sup>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③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 ④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공동구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포함한 10~20인으로 공동구협의회를 구성 · 운영

공동구 설치가 활성화 되면 하나의 지하공간에 여러 시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교통 장애요인 제거,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 대응,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용이 등 도시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내용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님들에게도 새로운 분야의 일거리라고 생각하며, 참고로 법률이 2010년 6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알려드리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재성 yjs60@chol.com)

<sup>1</sup> 중수도란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 화장실용수 · 세차용수 · 청소용수 · 조경용수 등에 이용하는 물

<sup>2</sup> 공동구협의회 : 제④항 참조